

충청북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3.10.24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3. 10. 20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)

가. 제안이유

- 소음·진동규제법이 개정(2002.12.30, 법률 제6845호)됨에 따라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사무의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

- 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여 관련업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관련 수수료 신설
 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: 1건당 10,000원
 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: 1건당 5,000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)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권한이 법률 제6845호(2002.12.30)로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,

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던 관련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개정된 소음·진동규제법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월(2003. 7월부터 시행)로 하고,

제2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「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어,

사실상 법 시행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법 시행일 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와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